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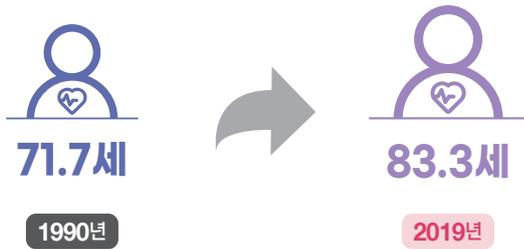


PART 01 |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1. 노후준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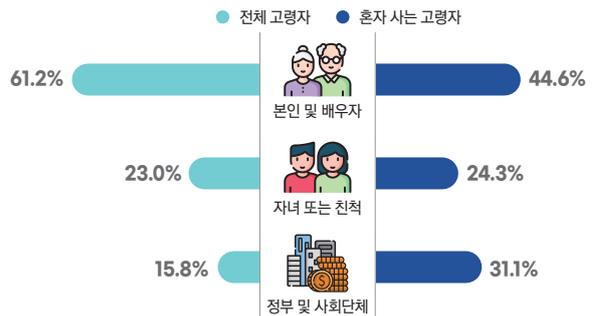
-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시간이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 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부담 비율 중 본인 부담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20년, KOSIS 통계청), 예상 은퇴연령은 52세로 노후대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기대수명



※ 출처 : 2020 KOSIS, 통계청 생명표

65세 이상 고령자 생활비 마련 방법



※ 출처 : 2021 고령자 통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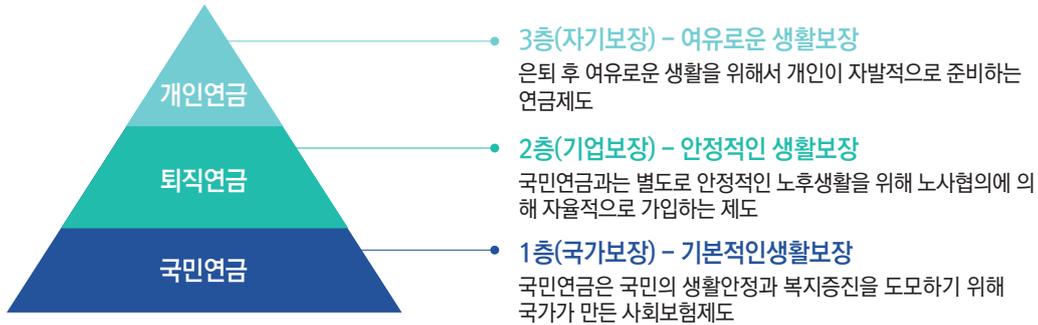
숫자로 알아보는 고령화문제



-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길어지는 노후 기간을 '품위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후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래생활을 예측하고 현재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여 노후 기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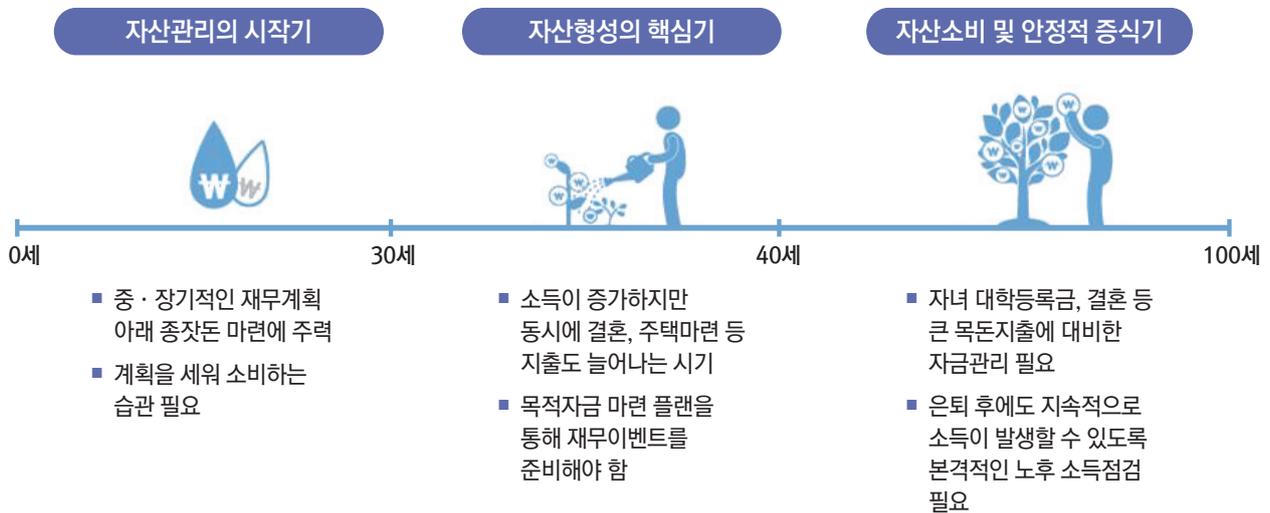
2. 노후준비 기본 전략

-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개인연금으로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며 현재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 한국의 노후보장은 3층 체계로서
1층 - 국민연금, 2층 - 퇴직연금, 3층 - 개인연금으로 구성 ※ 출처 : 금융감독원

3. 자산·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





PART 02 퇴직연금제도 일반

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퇴직연금제도란?

-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구성됩니다.

DB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회사가 쌓고 회사가 운용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함
-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 수령

DC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도 근로자에게 귀속
-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

IRP

|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 근로자가 이직,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세제혜택(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운용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참고 기업형IRP(10인 미만 특례제도) ★

▶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 한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규약 작성없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로 10인 이상이 되면 1년 이내 다른 퇴직연금제도(공단 DC형 제도)로 전환하여야 하며, 퇴직 시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 개인형 IRP |
|----------|---|---|---|
| 퇴직급여 | (평균임금×30일)× 근속기간 | 연간 임금총액×1/12 ±운용수익(손실) |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수익(손실) |
|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회사) | 가입자(근로자) | 가입자 |
| 가입자 부담금 | 납입불가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모든연금계좌합산)하며 세액공제는 납입액(700만원/900만원 한도)의 16.5%(13.2%) | |
| 급여수령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시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일 때 일반계좌로 수령 가능. ※ 일반계좌 수령시 연금수령은 불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수령 : 55세 이상, 수령기간 5년 이상 • 일시금 수령 : 언제든지 계좌해지 가능 |
| 중도인출 | 불가 | 가능(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 |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구분 | 의의 | 적용 |
|------|--|---------------------------|
| 임금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세부적인 임금 포함 항목은 회사를 통해 확인 | |
| 평균임금 | •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 퇴직급여 산출 |
| 임금총액 | • 1년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의 합계액으로 퇴직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총합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퇴직급여 산출 |

※ 평균임금과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산입하나, 사업장의 임금지급 실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달라질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현황

| 부담금의 종류 |

-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가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가입자 추가 부담금’ 두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및 납입시기 |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 납입시기 :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 1
- 공단지동이체일 : 1일, 10일, 25일 중 택 1
- 부담금 납입예정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날이며, 사용자가 위 납입시기중 선택하여 선납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납입 현황 안내 |

- 부담금 납입 현황 : 우편으로 고지된 퇴직연금 운용현황 안내 및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전자 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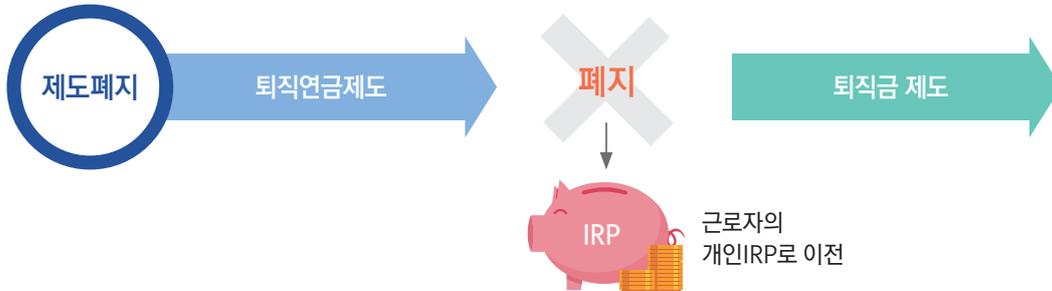
| 지연이자 부과 |

| 구분 | 내용 |
|-----------|--|
| 지급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시기(규약 상 납입예정일이며, 연장한 경우 그 기일)에 미납하는 경우, 미납한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조) |
| 지연이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기일 다음날 ~ 퇴직 후 14일 : 연 10% • 퇴직 후 14일 다음날 ~ 납입일 : 연 20% |
| 지연이자 제외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퇴직연금 제도 폐지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IRP)으로 이전 됩니다.
- 폐지된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만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진행합니다.
 -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금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 제출(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가입자에게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등 통지
 -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미납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 제도 중단

- 회사가 재정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적립금이 부족하여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이 잠시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 제도 폐지와는 달리 퇴직금이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추후에 다시 제도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중단 기간 동안은 퇴직금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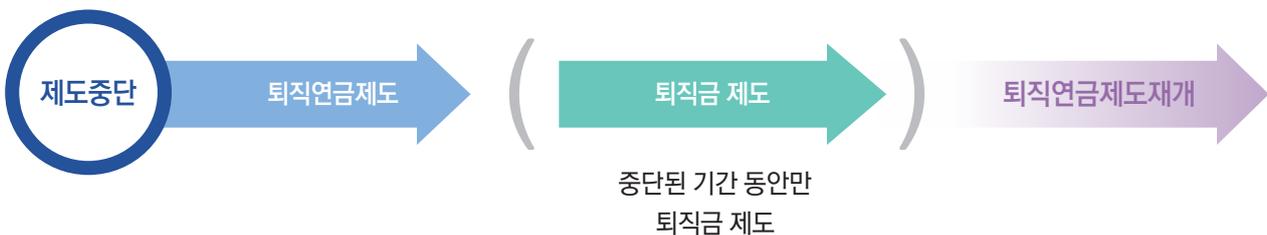
| 제도 중단 기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퇴직연금 주요 업무 |

회사

-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부담금이 있는 경우 납입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 가입자 교육 실시
-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 운용 등 업무
-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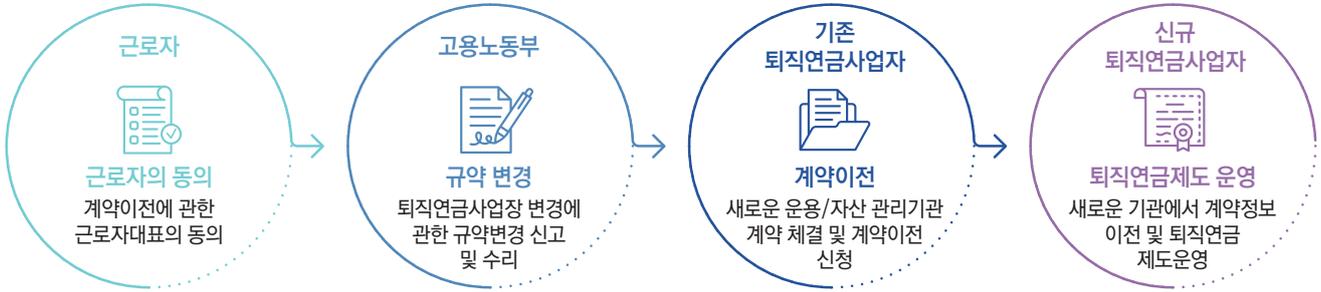
퇴직연금 사업자

- 가입자 퇴직에 따른 급여의 지급
- 가입자 교육 실시
- 급여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통지 등 업무
-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

-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를 변경하여 퇴직연금계약을 타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기업형IRP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규약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2.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단, 가입자가 법정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 한도(적립금의 100%)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담보제공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액의 50% 한도)

| 중도인출 · 담보대출 요건과 사유 | ※ 현재 공단에서 운용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만 가능

| 구분 | 중도인출, 담보대출 사유 |
|----|--|
| | •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 구입 |
| |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동일 사업장 재직 중 1회만 가능) |
| | •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부양가족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 (의료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
| | • 최근 5년 이내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개인회생 (담보대출 : 담보를 제공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중도인출 : 결정일/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해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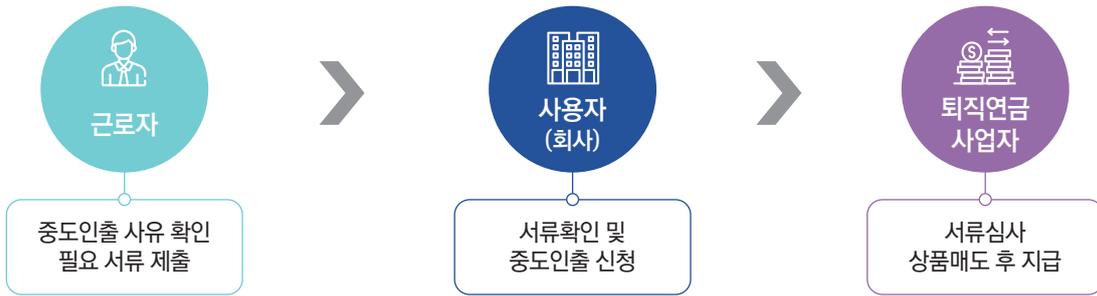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발생 사유는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은 DC, IRP제도 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해당 관련 고시 미확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중도인출 신청 시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프로세스 |



| 중도인출 시 필요서류 |

-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서식 하단 참조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적용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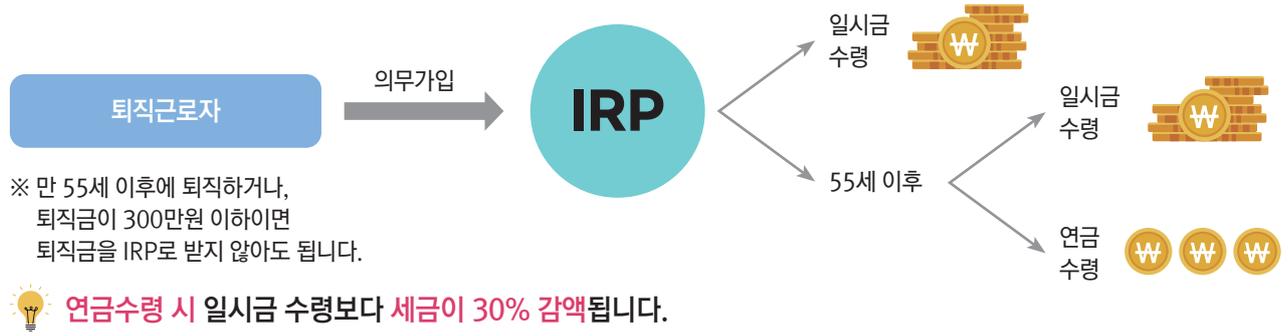
- ▶ 확정기여형(DC)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 및 IRP과세이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가입자 추가부담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로 과세 됩니다.
(단, 중도인출 사유 중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됨)

3. 퇴직급여의 지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의 적립금 이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모아 은퇴시점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종류 | 제도유형 | 수급요건 |
|------|----------------------|---|
| 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
| 일시금 | DB, DC, 개인형 IRP(기업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IRP 계좌로 이전 • 예외 :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금 수령가능 <p>※ IRP 계좌로 이전된 적립금은 언제든지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 가능</p> |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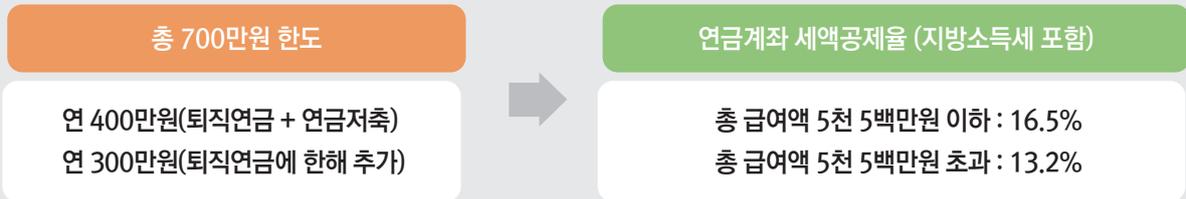
• IRP의 3가지 효과

| 구분 | 내용 |
|-----------|--|
| 과세이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 투자기회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수령 시 세금 차감없이 전액 입금, 자금인출(일시금, 연금)까지 세금 납부 연기 - 세금이 원금에서 차감되지 않아 이연세액이 재투자되는 효과 |
| 절세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
| 자산관리 운용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P내에서 다양한 상품 선택 및 투자비율 변경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가능 가입자부담금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금은 한도내 세액공제 대상 |

참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연간 납입액 한도와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희망 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연금저축, DC, IRP 합산)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총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간 900만원(2020년 ~ 2022년 3년간 한시 적용)



▶ 세액공제대상 한도

|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한도(연금저축, DC, IRP합산) | |
|---------------|----------------------------|-------------------------|
| 1.2억(1억)원 이하 | 50세 미만 |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포함) |
| | 50세 이상(2020~2022년 한시 운영) |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포함) |
| 1.2억(1억)원 초과 | 700만원(연금저축 300만원 한도 포함) | |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용상품 중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형태



① 원리금보장형

-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
- 예금자보호 가능

② 실적배당형

-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을 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 배당
-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퇴직연금 과세체계

- 연금계좌에서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 원천(퇴직급여, 가입자추가부담금 및 운용수익)과 수령 방법(일시금과 연금 수령)에 따라 과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원천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주1)} |
|---------------------------------|--------------|------------------------------------|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 70%) |
| 가입자추가부담금 ^{주2)}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16.5%) | 연금소득세 ^{주3)} (3.3% ~ 5.5%) |

주1) 연금수령

-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받는 금액 중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

- 연간 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현재연금계좌평가액}}{(11-\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2013.03.01.이전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금수령연차에 5를 더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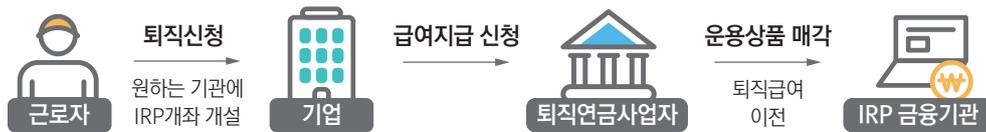
-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등)로 해지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봄.

주2) 가입자추가부담금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제외.

주3) 가입자추가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 시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임.

퇴직급여 지급 절차

- 퇴직급여의 조속한 지급 처리를 위해서 가입자와 사용자는 퇴직 발생 즉시 공단에 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고용종료 신고와 별개 신고임에 유의)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은 반드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계좌에 이전하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 IRP이전 시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과세이연 되므로 퇴직소득세 상당액만큼 투자 원금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어 노후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합니다.
- 근속연수 1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1년 미만인 자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을 위해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예외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등

퇴직급여 신청 방법

- <퇴직근로자> IRP계좌개설 ➡ <사용자>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 ➡ <퇴직연금사업자> IRP계좌에 퇴직급여 지급
 ※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 전자민원창구 → 납입/지급 → 퇴직연금지급신청(사업주) → 가입자 동의(가입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
 ※ 팩스신청시 구비서류 ① 퇴직연금급여지급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② 퇴사자명의 IRP계좌사본첨부 필수, 그 외 지급사유별 첨부서류는 신청서 하단을 참조